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나3059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2나305920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2604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채해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시형

변론종결 2022. 6. 22.

판결선고 2022. 8. 10.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 26. 선고 2020가단260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15행의 ‘대리인 Q’을 ‘피고의 남편인 대리인 Q’으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원고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피고의 남편 Q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Q의 요구로 ‘O의 Q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인데, 그 중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에 대하여는 당시 원고가 경주시와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할 경우 이자 없이 원금 3억 원만 지급하고, 원고가 패소할 경우에는 그 의무를 면하기로 하였으며, 차용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고, 나머지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 3천만 원에 대해서만 연 25%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2)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후 경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므로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고(또는 2020. 4. 10. O가 원금 3억 원과 이자 5천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로써 소멸하였다), 차용금 1억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을 경료하여 준 7천만 원 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인 부동산 중 7필지가 수용되면서 공탁자가 2017. 5. 15. 합계 415,128,0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중 피고가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령할 8,825만 원¹⁾이 포함되어

변제공탁되었으므로 이로써 소멸되었으며, 나머지 3천만 원 채무에 대하여는 그 담보물 중 수용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가 경매신청을 하여 합계 43,658,467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이로써 소멸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2억 원을 추심하여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위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 상의 채무는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M로부터 2억 원을 추심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자 미지급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와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을 2017. 5.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위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말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위 차용금 등 채무(차용원리금 채무 및 대위변제약정금 채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에 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피고와 합의하였던 사실 및 소외 회사가 위 차용금 및 대위변제약정금의 변제를 지체하는 경우 피고에게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의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소외 회사는 적어도 2016. 10. 31. 위 차용원리금 및 대위변제약정금 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에게 2016. 11. 1. 기준 차용원리금과 대위변제약정금 합계 402,328,767원[= 4억 원(= 차용금 1억 원 +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 +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2016. 9. 28.부터 2016. 10.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2,328,767원(= 1억 원 × 0.25 × 34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중 4억 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중

보증한도 2억 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 및 차용금 1억 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7천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AC사주차장 개발부지와 관련하여 경주시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대위변제약정금 3억 원은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O가 Q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피고와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대위변제약정금의 범위와 변제기는 O의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내용에 따라야 하므로 지연손해금에 관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제5, 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대위변제약정금 채무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대위변제약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O의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는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지연손해금이나 변제기를 위 차용금 채무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공정증서 제3조는 연 25% 이자 약정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만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정증서 제5, 6조는 특별히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바, 차용금과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모두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공정증서 제5조가 지연손해금율을 연 25%로 정하고 있는 것은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것으로 피고가 채권자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이자제한법 제6조에 따라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이 연 25%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지 피고가 채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 제5조에서 정한 연 25%의 지연손해금율이 현저히 공정을 잃은 것으로 무효라거나 반드시 감액되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지연손해금율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채무의 일부 변제

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 공탁금

원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이 수용되어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로 합계 415,128,000원이 공탁되었고, 그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부동산 7필지에 대한 공탁금이 합계 8,825만 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고,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 14필지가 수용되어 공탁자 주식회사 Y이 소외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년금제359호로 415,128,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7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탁금은 2017. 6. 28. 소외 Z, AA, AB이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위 공탁금에서 변제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위 공탁금 중 8,825만 원에 대하여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었으므로 실제로 피고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을 변제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관련 배당금

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 경매절차에서 2018. 5. 30. 배당받은 38,349,370원위 돈을 2016. 10. 31.까지 기발생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2,328,767원 및 2016. 11. 1.부터 2018. 5. 30.까지 원금 4억 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57,808,219원[= 4억 원 × 0.25 × (1년 + 211일/365일)]에 우선 총당하면 2018. 5. 30. 기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121,787,616원이 남게 된다.

원고는 위 배당금이 변제이익이 많은 차용금 채무에 먼저 총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원금 1억 원에 대한 2018. 5. 30.까지의 이자는 41,780,821원[= 2,328,767원 + 1억 원 × 0.25 × (1년 + 211일/365일)]으로 위 배당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배당금을 차용금 채무에 먼저 총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자에 총당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경매신청 당시 원금 70,000,000원을 채권 금액으로 기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배당된 38,349,370원은 소외 회사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자가 아니라 원금에 총당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배당된 배당금이 담보권자가 가지는 수개의

피담보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민법 제476조에 의한 지정변제충당은 허용될 수 없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그 합의에 따른 변제충당도 허용될 수 없으며, 획일적으로 가장 공평, 타당한 충당방법인 민법 제477조 및 제47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충당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1339 판결 등 참조), 위 38,349,370원 역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충당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L 경매절차에서 2019. 11. 13. 배당받은 5,309,097원위 돈을 위 ①항 기재 남은 이자 등에 우선 충당하면 2019. 11. 13. 기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262,231,943원[= 기발생 이자 등 116,478,519원(= 121,787,616원 - 5,309,097원) + 원금 4억 원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11. 13.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5,753,424원{= 4억 원 × 0.25 × (1년 + 167일/365일)}]이 남게 된다.

원고는 위 배당금에 관하여도 변제이익이 많은 차용금 채무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용원금 1억 원에 대한 2018. 5. 31.부터 2019. 11. 13.까지의 이자는 36,438,356원[= 1억 원 × 0.25 × (1년 + 167일/365일)]으로 위 배당금액을 초과하므로 위 배당금을 차용금 채무에 먼저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자에 충당될 뿐이어서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 2020. 4. 10. 잔존 채무원리금

2020. 4. 10. 기준 원리금은 원금 4억 원 및 이자 등 303,053,860원[= 위 ②항 기재 기발생 이자 등 262,231,943원 + 2019. 11. 14.부터 2020. 4. 10.까지 4억 원에 대한 연 2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40,821,917원(= 4억 원 × 0.25 × 149일/365일)] 합계 703,053,860원이 되고, 갑 제9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20. 4. 10. M 소유의 경주시 N 임야 8,692㎡ 등에 관하여 2018. 1. 26. 경료된 채무자 O, 근저당권자 P,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인 근저당권의 말소와 관련하여 35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액을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액에서 제외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및 대위변제약정금 채무의 원리금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원고는 피고가 위 350,000,000원을 수령한 후 “전액 변제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변제확인서를 교부하여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한 O의 차용금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소외 회사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하여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일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위변제약정금 채무는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와 별개의 채무로서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원리금에서 소외 회사가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와 중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까지 당연히 전부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채무가 전액 변제되는 경우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원리금 역시 전부 소멸한 것으로 보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및 대위변제약정금 채무 원리금을 2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한 자로서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M에 대한 채권 2억 원을 추심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지영, 판사 윤남현

1) 경주시 R, S, T, U, V, W, X에 관한 공탁금액의 합계금이다.